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구직자취업촉진법’)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·취업지원 중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20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2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 (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처분 사유	처분의 내용	
김O효 (97.07.28.)	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알림	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따른 초기상담을 위해 전화 연락 및 출석통지 하였으나,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상담일('26.3.11./3.26.)에 방문하지 않음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	폐문 부재

4. 공고기간: 2026. 7. 20. ~ 2026. 8. 3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이강미(Tel. 051-860-200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